

『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5월 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5월 15일

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이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법률 제14476호, 2016. 12. 27. 공포, 2017. 3. 28. 시행)됨에 따라,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법령과의 관계,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
(안 제1조, 제2조, 제5조)
- 「지방세징수법」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, 체납처분 유예 대상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
(안 제3조 ~ 제4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○ 본 『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안』 은

-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이 「지방세 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2017. 3. 28. 시행)됨에 따라,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